서울특별시 마포구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0. 6. 17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0. 5. 22.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20. 5. 26.

다. 상정일자: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(2020. 6. 17.)
상정, 심사,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생활보장과장 임강숙

가. 제안이유

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마포하우징사업 추진을 위하여 건설임대주택 분야를 신설하고, 그 밖에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1) 건설임대주택 분야 관련 규정 신설

-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- 기금 조성 및 용도, 지원대상, 신청 및 선정절차, 입주기간 규정 중 건설임대주택 분야 추가(안 제5조~안 제6조, 안 제10조~제12조, 안 제15조)

2)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원회 정비

- 위원회 정원 수정 및 구성 등 규정 신설(안 제8조)

3) 주거위기가구 임시거소의 신속한 지원을 위한 심의체계 개선

- 임시거소 지원 심의기구 변경 및 단서 조항 신설(안 제12조)

3. 검토보고 (최종익 전문위원)

○ 본 개정조례안은 2020.5.22.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72호로 제출되어, 2020.5.26.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○ 개정 취지는 주거안정자금 지원과 매입임대주택 공급으로 대표되는 마포하우징사업에서 구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건설임대주택[5] 사업영역까지 확대하는 것과 위원회의 운영 및 임시거소 지원 심의체계 개선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주거취약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저소득주민 주거복지사업 운영의 근거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였음.

○ 동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, 안 제2조제4호에서 구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'건설임대주택'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와 안 제10조에서 제12조, 안 제15조의 경우는 기금의 조성 재원 및 지원 용도와 지원대상, 그리고 신청 및 선정 절차에 대하여 각각 건설임대주택 분야를 추가 명시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

---

5) **제2조(정의)**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4. 1. 14., 2015. 1. 6., 2015. 8. 28., 2016. 1. 19.>

1. "공공주택"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「주택도시기금법」에 따른 주택도시기금(이하 "주택도시기금"이라 한다)을 지원받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,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.

가.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「주택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(이하 "공공임대주택"이라 한다)

나.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「주택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(이하 "공공분양주택"이라 한다)

1의2. **"공공건설임대주택"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.**

1의3. "공공매입임대주택"이란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.

규정에 따라 위원장의 업무대행자인 부위원장 명시와 사업 확대에 따른 위원 수를 5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자 하는 규정을 명시하였음. 참고로 본 조례는 2019.7.1.부터 시행된 이후 2020.5.14.기준으로 기금 수입액은 49억 1028만원에 지출액은 9억 8609만원이며(자료출처: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, 채우진 의원) 공공임대주택은 임시거소 13개소와 매입임대주택 3개소 총 16개소를 지원하였고 주거안정자금은 12가구 720만원을 지원한 바 있음.

○ 따라서, 「주거기본법」 및 「공공주택 특별법」과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[6]에서 정한대로 저소득 주거취약 주민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구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[7]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을 신설하는 등 주거복지사업을 확대 추진할 뿐만 아니라 주거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임시거소의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심의체계를 개선하는 등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마포하우징사업을 추진하고자 규정하였음.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---

6) **제8조(위원회의 설치내용)** 구청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나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.
1. 설치 목적 및 기능
2. 위원의 구성 및 임기
3. 존속 기한(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)
4. 위원의 결격사유, 제척·기피·회피(구민의 권리·의무와 관련되는 인가·허가, 분쟁 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·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)
5. 회의의 소집 시기,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
6. **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**
7. 분과위원회, 실무위원회 등을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7) **제4조(공공주택사업자)**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. <개정 2010. 4. 5., 2012. 1. 17., 2013. 3. 23., 2014. 1. 14., 2015. 1. 20., 2015. 8. 28.>
1. **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**
2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
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. 4. ~ 6.생략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 타 : 없 음